

# 제13대 서울특별시골프협회장 선거

## 임원의 결격사유

서울시골프협회 규약 제26조 제1항

-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(본 협회의 회장으로 한정한다)
  2. 「국가공무원법」제33조(결격사유)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3.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·도 및 시·군·구 종목 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(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.) (2024.03.07.개정)
  4. 「국민체육진흥법」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·도 및 시·군·구 종목단체가 주최·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「형법」 제314조 및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
  - 4의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(2024.03.07.신설)
  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「아동·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  - 4의3. 선수를 대상으로 「형법」 제2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날부터 10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(2024.03.07.신설)
  5. 「국민체육진흥법」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·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가.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
    - 나. 승부조작, 편파판정 횡령·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
    - 다.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않는 사람
  6. 국회의원, 지방자치단체장, 지방의회의원
  7. 사회적 물의, 대한체육회와 대한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그 밖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사람
  8. 체육회 이사회가 회원단체(회원종목단체, 회원시·도체육회)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해당 회원단체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(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) (2024.03.07.개정)
- ② 회장의 친족(「민법」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)은 임원이 될 수 없다.
- ③ 본 협회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·직원은 본 협회의 임원이 될수 없다. 다만, 본 협회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본 협회는 해당자로부터 본 협회와 위법·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임원과 본 협회 간 거래관계에 위법·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사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요구 할 수 있다.
- ④ 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.

서울특별시골프협회 선거관리위원회

